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산업 정의 및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 근거 신설〉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31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제 안 경 위	1
II. 제 안 이 유	1
III. 주 요 내 용	2
IV. 검 토 의 견	4
1. ‘농산업’ 정의 신설 및 농산업 지원정책 근거 마련	4
2.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 및 시책 근거 마련	33
【참고1】 농림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내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	39
【참고2】 인구감소지역 개요	40
【참고3】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관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41
【참고4】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내 농촌 분포	4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2. 제 출 일 : 2024. 8. 30.
3. 회 부 일 : 2024. 9. 2.

II. 제안이유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확장 및 농촌지역 소멸위기 심화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농촌 관련 정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농업의 경우, 스마트 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농기자재 수출 증가 등 전후방 산업의 규모와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의 범위를 전후방 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농촌의 경우, 기존에 읍·면으로 정의되는 경직적인 농촌 구분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및 소멸위험 등 다양한 특징을 감안하여 농촌을 정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투자·국제협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 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경제활성화 및 인구유입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의 농촌지역을 소멸 위험도 등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농업과 농산물 가공업, 농산물 유통업,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과 그 밖에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을 ‘농산업’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9호).

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농산업 발전 전략을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2항제6호).

다. 정부가 매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때 농산업 동향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17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3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 기술 연구·개발·보급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35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 등 농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농산업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36조제1항).

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48조의2).

아.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 등 농산업 인력·기술의 교류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57조제1항).

자. 정부는 농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5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식품 등 농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IV. 검토의견

1. ‘농산업’ 정의 신설 및 농산업 지원정책 근거 마련

가. 농산업 정의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에 ‘농산업’의 정의를 신설하여, 현행법에 따른 지원정책 대상에 농산업을 추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3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u><신 설></u>	9. “농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과 다음 각 목의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가공업: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7호에 따른 식품,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나. 농산물 유통업: 농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다.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농촌 관련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라. 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 농업 및 관련 활동에 투입되는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현행	개정안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u>등을 제조·판매하는 산업</u> <u>마. 그 밖에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u> 10. (현행 제9호와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등장하고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이 확대되는 등 농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 식품산업 및 관련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의 정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검토의견

① 농산업 정의 신설의 필요성 검토

현재 ‘농산업’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농업의 전·후방산업으로서 ‘넓은 의미’의 농업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이에 관한 별도의 법적 정의는 없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 수직농장 등 스마트 농업의 확산, 농산물 온라인 유통의 강화, 기존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¹⁾, 바이오기술(BT)²⁾, 녹색기술(GT)³⁾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산업의 대두, 농촌융복합산업의 확장 등에 대응하여, 이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인 ‘농산업’ 정의를 신설하여 농업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⁴⁾되고 있음.

이는 농업·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 집약적인 기존 농업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농촌소멸을 거스를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광범위한 농업·농촌 관련 전·후방산업과 및 첨단기술기반 농업 관련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농업 전·후방 산업을 ‘농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농업’의 범주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이에 연동하여 ‘농업인’의 범위⁵⁾도 확장되는데,

현행 제도에 따르면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농민수당 등의 지급대상이

1) 정보통신기술(ICT): 정보와 통신을 결합하여 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기기, 소셜미디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정보 교환 및 연결 기술

2) 바이오기술(BT): 생물체나 생물체의 세포, 분자 등을 활용하여 인류에게 유용한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 기술 분야. 생명 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등을 포함하며, 다양한 산업에 걸쳐 활용

3) 녹색기술(GT):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 재생 가능 에너지 (예: 태양광, 풍력), 에너지 효율, 자원 재활용, 오염 제어, 탄소 배출 감소 등 포함

4) 「농민신문(23.11.10.)」 [농업·농촌의길 2023] 진화하는 농업…전후방산업 아우른 개념 재정립 필요

5)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될 수 있고, 농업인 건강·연금보험 가입, 농지취득, 세제혜택의 적용대상이 되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농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대신, ‘농산업’의 정의를 별도로 신설하고 정책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수산업과 어촌 정책에 관한 기본법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15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분법되어 제정될 당시부터 ‘수산업과 어촌’, ‘수산인과 어업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규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행법에 농산업 관련 규정이 추가되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이 농업에서 농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직농장·스마트팜 등의 분야에서 거대 기업 자본의 농업 분야 진출이 본격화될 수 있고, 기존 농업 및 농민에 대한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⁶⁾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에 ‘농산업’의 정의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부처 내·외부 협의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농산업 개념 도입 과정에서 각계의 찬·반의견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참조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산업 정의 관련 연구】

주제	수행주체	연구기간
‘미래농업 대응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을 위한 연구	농특위	’23.7월~ ’23.12월
농산업의 정의와 범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4.6월~ (진행중)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4.10.28. 제출

② 농산업 정의 규정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현행법의 지원대상인 ‘농업 및 식품산업’ 이외에 ‘농산업’ 개념을 추가적으로 정의하고, 농업의 전·후방산업인 ① 농산물가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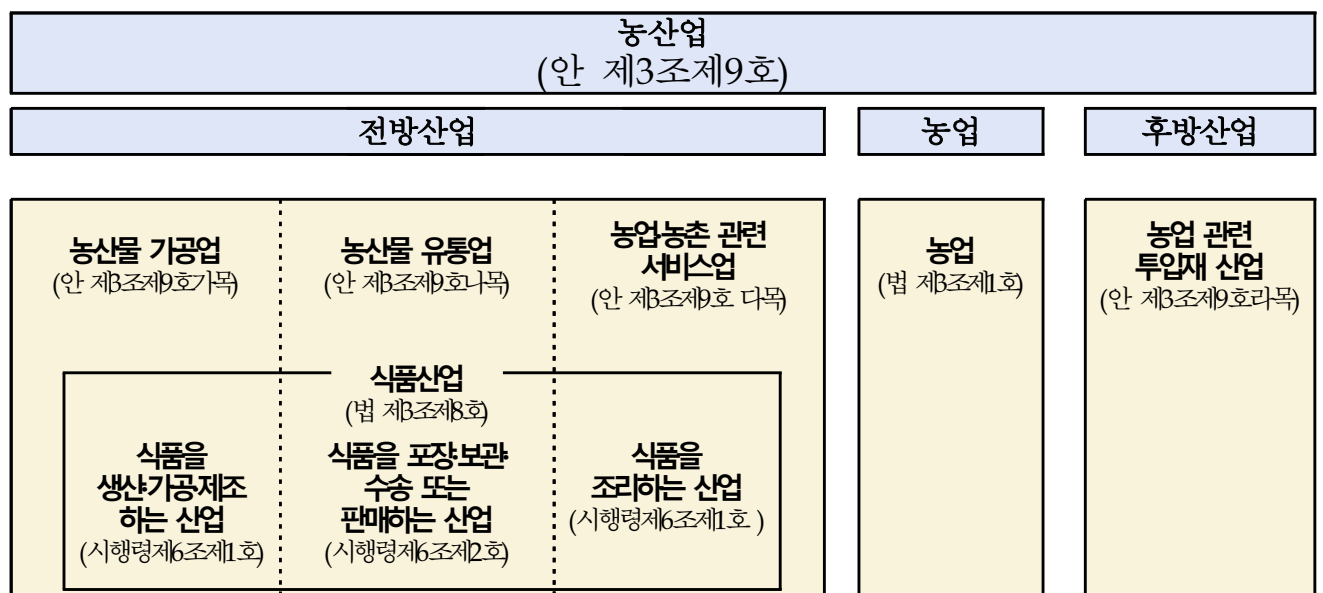
6) 섣범 복잡해진 ‘농업 재정의’...수직농장도 포함해야 하나(농민신문, ’24.3.26)

② 농산물유통업 ③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및 ④ 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이는 농업, 식품산업과 농산업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농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농업, 식품산업 및 농산업의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음.

【농업, 식품산업 및 농산업 개념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4.10.28. 제출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제3조제9호다목에서 농산업의 한 범주로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개념이 다소 모호하여 그 범주를

법률 규정만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조제9호다목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때 다음 표와 같이 음식점업·주점업, 농촌관광업, 농산업관련 금융·보험업, 연구개발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여 구체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러나 개정안의 법문만으로 해당 업종이 포함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예시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범주’ 포함 업종(안)】

대분류	소분류	포함업종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농산업 관련 여가 및 오락 서비스업	농촌 관광 민박업
		농산업 관련 여가 및 오락 서비스업
	농산업 지원 서비스업	농산업 관련 금융 및 보험업
		농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경영컨설팅업
		농산업 관련 교육서비스업
		농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및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기타 농산업 지원서비스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4.10.28. 제출

둘째,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현행 제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농산업의 정의를 제9호에 신설하고 있는데, 현행 제9호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⁷⁾에서 인용되고

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있는 바, 개정안 수용시 농산업의 정의는 제10호로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관련규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내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 분류】

하위 구성요소			사업명	
농 산 업	농업 전방 산업	농산물 가공업		농식품 및 담배 제조업
				축산식품 제조업
				기타 농산물 가공품 제조업
		농산물 유통업	도소매업	농산물 중개업
				농산물 및 관련 용품 도매업
				농산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운송업	농산물 화물, 가축 및 반려동물 운송업
				농산물 창고 및 물류터미널 운영업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농산업 관련 여가 및 오락 서비스업	농촌 관광 민박업	
			농산업 관련 여가 및 오락 서비스업	
		농산업 지원 서비스업	농산업 관련 금융 및 보험업	
			농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경영컨설팅업	
			농산업 관련 교육서비스업	
			농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및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기타 농산업 지원서비스업	
	농업		농작물재배업	
		시설작물 재배업		
		축산업		소 사육업
				양돈업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말 및 양 사육업
				기타 사육업(반려동물, 곤충 등)
		임업		영림업
				벌목업
				임산물 재배업(노지, 시설)
				임산물 채취업
	농업 후방 산업	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		농산업 관련 건설업
	농산업 투입재 관련 제조업			
	농산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4.10.28. 제출

이하에서는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농산업으로 개정하는 조문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 농산업 발전 전략 포함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농산업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어촌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1. ~ 5. (현행과 같음)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u>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	6. <u>그 밖에 농산업 발전 전략 등 농업·농촌 -</u>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③ ~ ⑦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1. 식량용 쌀과 보리류의 자급률 2. 모든 곡물의 자급률 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3의2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요 수산물의 자급률 5.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어촌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어촌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산업 발전 전략’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농산업의 육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3) 검토의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임.

‘농산업 발전전략’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면,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 및 ‘시·군 및 자치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군·구 계획’)'에서 구체화되어 시행되게 됨(제14조제5항).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업 발전전략’의 시행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발생하는 효과가 있음(제16조).

이에 ‘농산업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 제14조에 따른 기본계획 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은 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제14조제2항제6호에 농산업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현재 같은 호에 규정된 ‘농업경영비 절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 취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보이는 바, ‘농업경영비 절감’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 위한 문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관련규정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16조(기본계획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서 작성 시 농산업 동향 포함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 제17조는 정부가 매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 동향, 정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연차보고서에 ‘농산업 동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정부는 매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u>추진현황</u>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 ----- ----- ----- <u>추진현황 및 농산업 동향</u> ----- -----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서 내 ‘농산업 동향’을 포함하여 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 등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연차보고서는 농업·농촌·식품산업의 ‘현황’과 함께 ‘정책동향’을 포함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서에 ‘농산업 동향’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현행 연차보고서의 예를 고려할 때 ‘농산업’ 분야도 ‘정책동향’에 관한 사항을 함께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평가 및 보완계획 대상에도 ‘농산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라.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 마련 근거 수립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농산업의 하위 범주인 ‘농업투입재 산업’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농산업’의 육성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를 병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신설, 안 제34조2 제1항 삭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농어업기계·자재·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농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 <삭제> ①·②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등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검토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개별법률과 예산사업을 통하여 농업 관련 전·후방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중에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지원 사업 현황】

하위 구성요소		산업명	관련 법령	지원 사업(예시)		
				사업명('24년 기준)	예산액(억원)	
농산업	농업 (안 제3조 제9호 본문)	농작물재배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축산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공익기능증진직불	28,702	
		축산업		맞춤형농지지원	12,412	
				농업자금이차보전	5,577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957	
		임업		축사시설현대화	1,396	
	농업전방산업	농식품 및 담배 제조업	- 식품산업 진흥법 - 김치산업 진흥법 -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담배사업법(가제부)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	262	
		축산식품 제조업		기능성식품산업 육성	33	
				전통발효식품 육성	185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	263	
		기타 농산물 가공품 제조업		농식품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471	
			그린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51		
		농산물 유통업 (안 제3조 제9호나목)	농산물 중개업	- 유통산업발전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도매유통 활성화지원 (용자 포함)	1,171
			농산물 및 관련 용품 도매업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용자 포함)	237
			농산물 및		농산물 온라인거래	104

하위 구성요소			산업명	관련 법령	지원 사업(예시)	
					사업명('24년 기준)	예산액(억원)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안 제3조 제9호다목)	관련 용품 소매업		활성화 지원	371	
		농산물 화물, 가축 및 반려동물 운송업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농산물 창고 및 물류터미널 운영업		농산업수출활성화		60
		음식점업	- 외식산업 진흥법 - 한식 진 흥 법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105	
		음료점업				
		농촌 관광 민박업	- 농어촌정비법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	253	
		농산업 관련 여가서비스업		농촌유희시설 활용지역 활성화	27	
		농산업 관련 금융 및 보험업	- 재해보험법 - 농업협동조합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동물 보호 법 (동물장묘업 등)	귀농귀촌활성화지원	77	
		농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경영컨설팅업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	550	
		농산업 관련 교육서비스업		농업재해보험	6,571	
		농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및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농업인안전재해보험	956	
		기타 농산업 지원서비스업		가축분뇨처리지원	689	
				반려산업육성	38	
	농업 후방 산업	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 (안 제3조 제9호라목)	농산업 관련 건설업	- 농업기계화촉진법 - 종자산업법 - 농약관리법 - 사료관리법 - 비료관리법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확산지원	38
			농 산업 투입재 관련 제조업		종자산업 기반구축	103
			농 산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육자 포함)	136
					사료산업 종합지원	89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4.10.28. 제출

그러나 현행법에는 식품산업(제21조)과 농업투입재 산업(제34조제1항) 외에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육성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 관련규정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③ 시·도지사는 농업기계·자재·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법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의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법률임을 감안할 때, 현행법에 농산업의 육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정의규정에서 농산업을 농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34조에서 ‘농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하고 있음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둘째 ‘관련 부가가치’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농산업의 부가가치’로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은 현행 제34조를 제34조의2로 하고 제34조를 다시 신설하고 있는데, 개정에 따른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농산업의 육성에 관한

규정은 제33조의2로 신설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제34조에서 농업투입재 산업 육성과 관련한 제1항을 삭제하고 있으므로 제34조 조 제목도 “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에서 “농업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관련규정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③ 시·도지사는 농업기계·자재·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마. 농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보급 등에 대한 계획 수립 근거 마련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제3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업 및 식품관련 기술 연구·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개정안은 종합계획 작성 대상을 ‘농업 및 식품산업을 포함하는 농산업 전반에 관한 기술 연구·진흥’으로 확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농업 및 식품산업 등 농산업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 식품산업 등 농산업----- ----- 관련 기술----- ----- ----- ----- ----- ----- -----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개정안은 농산업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라는 의견임.

3)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 ‘기술·연구기술 진흥에 관한 계획’수립 대상을 ‘농업 및 식품관련 산업’에서 ‘농산업’으로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인데, 농산업의 기술집약적 성격을 고려하면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정의규정에서 ‘농산업’을 ‘농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안 제35조 제명과 본문에서 ‘농업과 식품산업 등 농산업’을 ‘농산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으로 예시되어 있던 기술을 “관련 기술”로 치환하고 있는데,

현행처럼 관련 기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바. 농산업 관련 기술개발 연구 수행 근거 마련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개정안은 기존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을 ‘농산업’으로 확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해당 산업군 전반에 대한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안 제3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u>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u> 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u>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u>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어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농업 및 식품산업 등 농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 <u>식품산업 등 농산업의 기술 등</u> ----- ----- <u>식품산업 등 농산업의 기술개발</u> ----- ② (현행과 같음)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정안은 국가 등의 농산업 관련 기술개발 추진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농산업 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라는 의견임.

3) 검토의견

개정안은 농산업 전반에 대한 신속한 기술 개발·보급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연구기관 등에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기술(BT), 녹색기술(GT) 등 첨단기술이 활용되는 농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밭농사 기계화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R&D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R&D 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정의규정에서 ‘농산업’을 ‘농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안 제36조 제명과 본문에서 ‘농업과 식품산업 등 농산업’을 ‘농산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사. 농산업 인력·기술의 국제교류 정책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정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력·기술의 교류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조항에 농산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 5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기술의 교류 ,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① ----- ----- ----- --- <u>식품산업 등 농산업 인력·기술의 교류</u> ----- -----.
②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 및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농어업·농어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인력·기술 교류 정책 대상에 농산업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3) 검토의견

농산업 분야 인력·기술 교류 추진을 통하여 농산업 분야 최신기술의 도입과 이를 통한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우리의 농산업 관련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식량 안보를 포함한 미래 농업 협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농업협력(ODA), 국제협력 관련 연구용역 등 농산업 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57조제1항에 따른 인력·기술 교류 이외에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정책에 관한 정보교류’ 역시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 농산업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수립·시행 근거 마련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정부가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 지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상위범주인 농산업 해외투자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8조(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정부는 농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연구와 농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8조(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 농산업----- ----- ----- -----.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동 개정안은 농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조사·연구 및 해외투자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농산업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3) 검토의견

농산업 해외투자란 자국 외의 국가에서 농산업 관련 활동에 자본을 투자하는 활동으로, 농산물 재배, 축산업과 같은 1차 생산 뿐 아니라, 농업관련

가공·유통·물류·기계·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의미함.

이러한 농산업 해외투자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며 농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는 측면이 있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국제통상지원 등을 통하여 농산업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농산업 해외투자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지속적 지원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자. 농산업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 마련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국가 등에게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식품 수출업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산물 및 식품의 상위범주인 농산업 수출진흥 정책과 농산업 관련 제품 생산자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u> 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제59조(농산물·식품 등 농산업의 수출 진흥) ① ----- <u>농산물·식품 등 농산업</u> ----- ----- -----

현행	개정안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u>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 <u>농산물·식품 등 농산업 관련 제품을 생산 및</u> ----- -----.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국가 등의 농산업 수출 진흥 및 생산·수출업자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라는 입장임.

3) 검토의견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및 식품 수출진흥을 위하여 수출통합조직 지원, 콜드체인 확립, 수출보험지원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개정안을 통하여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비료, 종자 등 농산업 제품에 대한 수출 지원이 강화될 경우, 농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시장확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정의규정에서 ‘농산업’을 ‘농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안 제59조 제명과 본문에서 ‘농산물·식품 등 농산업’을 ‘농산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 및 시책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인구유입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2(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인구 유입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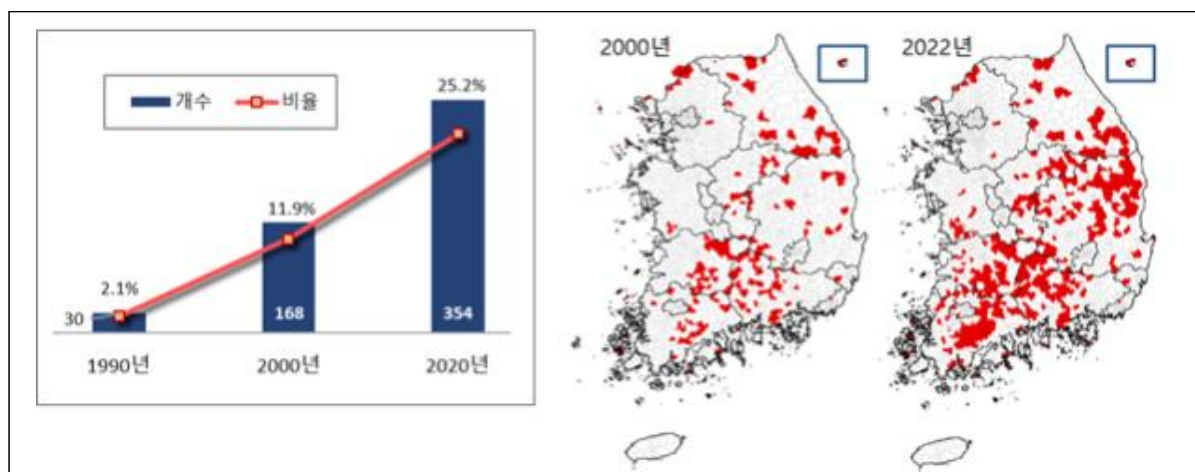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의 전제로서 농촌지역을 상세히 분석하여 대상 지역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향후 「지방 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관심지역’으로 규정할 것을 검토 중이고, ② 지정은 읍·면을 대상으로 하며, ③ 지정기준은 ‘인구구조 변화’와 ‘농업환경변화’ 부문을 고려하여 설정할 계획으로 설명하고 있음.

다. 검토의견

현재 농촌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 2천명 미만의 읍·면이 1990년 전체 읍·면 중 2.1%였던 것에 반해 2000년에는 11.9%, 2020년에는 25.2%로 증가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도 급증하고 있어 지역 공동화 진행이 빠른 것을 알 수 있음.

【인구 2천명 미만 읍·면 현황(2000~2020)】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농촌 정의 재정립 방안 마련 연구

또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읍·면 지역이라도 지난 20년간 인구감소 속도가 매우 가파른 지역과 오히려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구분되는 등 개별 지역마다 인구감소 여건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읍·면 유형별 평균 인구 변화율(2000~2020)】

(단위: %)

지역구분		근교	일반	원격	전체
수도권	읍	133.9	36.0	-2.8	97.4
	면	42.2	14.1	9.7	23.2
	전체	75.9	17.8	8.5	41.2
수도권 외	읍	82.7	11.0	-15.8	20.9
	면	-9.4	-10.9	-24.6	-14.5
	전체	11.9	-7.9	-23.2	-9.0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농촌 정의 재정립 방안 마련 연구

이를 고려하면, 도시 대 농촌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이나 전체 시·군 또는 읍·면 지역을 농촌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인식하여 추진하는 농촌소멸 대응 정책은 그 효과성에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같은 농촌지역이라도 특히 소멸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시행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소멸지역과 그 개념상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준비 중인 안에 따르면, ① i) 인구감소지역이 ‘인구구조변화’에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ii)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은 ‘인구구조변화’와 ‘농업기반변화’ 기준으로 농촌부문에 특화된 지표를 구성하고, ② i) 인구감소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고 있는 것과 차별화하여 ii)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은 읍·면 단위로 지정될 것으로 보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비교】

구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인구감소지역																												
법적 근거	- (개정 추진중)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정 목적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전제로서 <u>농촌 특성 (농업 기반, 인구 등)을 고려</u> 하여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	전국 차원의 인구 감소 및 불균형 심화에 따른 <u>지역소멸이 우려</u> 되는 지역(시·군·구)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행·재정적 지원 시책 추진																												
지정 대상	<u>읍·면(962개*)</u> * 전체 1,404개 읍·면 중 ‘인구감소지역(876개) 및 관심지역(86개)’ 내 읍·면	<u>시·군·구(229개)</u>																												
분석 기준 (안) 추후 하위법령 개정과정 에서 변동가능	<table><tr><th>구성요소</th><th>지표</th></tr><tr><td rowspan="3">농업* 부분</td><td>농업경영자 수 변화율</td></tr><tr><td>50세 미만 농업경영자 비율</td></tr><tr><td>경지면적 변화율</td></tr><tr><td rowspan="3">인구 부분</td><td>인구변화율</td></tr><tr><td>인구 규모</td></tr><tr><td>고령화율</td></tr></table> * 농림어업총조사(통계청) 참고	구성요소	지표	농업* 부분	농업경영자 수 변화율	50세 미만 농업경영자 비율	경지면적 변화율	인구 부분	인구변화율	인구 규모	고령화율	<table><tr><th>구성요소</th><th>지표</th></tr><tr><td rowspan="9">인구 여건</td><td rowspan="2">인구변화</td><td>조출생률</td></tr><tr><td>청년 순 이동률</td></tr><tr><td rowspan="3">인구 규모 변화</td><td>장기(2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td></tr><tr><td>중기(5년) 연평균 인구증감률</td></tr><tr><td>인구구조</td><td>유소년 비율</td></tr><tr><td rowspan="3">도시 인구특성</td><td>고령화 비율</td></tr><tr><td>인구밀도</td></tr><tr><td>주간인구</td></tr><tr><td>재정 여건</td><td>재정력</td><td>재정자립도</td></tr></table>	구성요소	지표	인구 여건	인구변화	조출생률	청년 순 이동률	인구 규모 변화	장기(2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	중기(5년)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구조	유소년 비율	도시 인구특성	고령화 비율	인구밀도	주간인구	재정 여건	재정력	재정자립도
	구성요소	지표																												
농업* 부분	농업경영자 수 변화율																													
	50세 미만 농업경영자 비율																													
	경지면적 변화율																													
인구 부분	인구변화율																													
	인구 규모																													
	고령화율																													
구성요소	지표																													
인구 여건	인구변화	조출생률																												
		청년 순 이동률																												
	인구 규모 변화	장기(2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																												
		중기(5년)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구조	유소년 비율																											
	도시 인구특성	고령화 비율																												
		인구밀도																												
		주간인구																												
	재정 여건	재정력	재정자립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4. 10. 28. 제출

【인구감소지역 관련 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소멸 우려가 높은’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함.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과 같은, ‘읍·면 대상’ 지정, ‘농업환경변화에 대한 고려’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문만으로는 어떤 지역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될 것인지에 대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인구 유입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소멸지역의 예와 같은 별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함.

【인구감소지역 관련 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③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제2항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이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을 통한 지역구분을, 지역별 맞춤형 농·산지 입지 규제 완화, 지구지정을 통한 규제 완화,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따른 농촌 특화지구 지정 등 농촌 관련 정책에 활용하려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지정을 통해 동 지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7

참고 1

농림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내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

코드	산업명	코드	산업명
전방산업		1613	기관 구내식당업
13	농식품 및 관련 가공품 제조업	1614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131	농식품 및 담배 제조업	1619	기타 간이 음식점업
1311	농식품 제조업	1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1312	농산물 가공 음료 제조업	1621	주점업
1313	담배 제조업	1622	비알코올 음료점업
132	축산식품 제조업	17	농산업 관련 여가 및 오락 서비스업
1321	도축업	171	농촌 관광 민박업
132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710	농촌 관광 민박업
1323	동물성 유지 제조업	172	농산업 관련 여가 및 오락 서비스업
1324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1720	농산업 관련 여가 및 오락 서비스업
1325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8	농산업 지원서비스업
139	기타 농산물 가공품 제조업	181	농산업 관련 금융 및 보험업
1391	방적업	1811	농산업 관련 금융업
1392	천연모피 및 가죽제품 제조업	1812	농산업 관련 보험업
1393	곤충 가공 기타 제품 제조업	182	농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경영컨설팅업
1394	농산물 가공 화장품 제조업	1820	농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컨설팅업
1395	농산물 가공 바이오연료 제조업	183	농산업 관련 교육서비스업
14	농산물 도소매업	1831	농산업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
141	농산물 중개업	1832	농산업 관련 고등 교육기관
1411	산업용 농산물 및 음식료품 중개업	1833	농산업 관련 교습 및 직업훈련 학원
1412	동물, 축산물 및 관련 식품 중개업	184	농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및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1413	천연모피 및 가죽제품 중개업	1840	농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및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142	농산물 및 관련 용품 도매업	185	농산업 관련 영상물 및 간행물 제작업
1421	산업용 농산물 및 식물 도매업	1851	농산업 관련 방송 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업
1422	농산물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1852	농산업 관련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
1423	농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186	농산업 관련 산업 및 전문가 단체
1424	농산물 가공 음료 및 담배 도매업	1860	농산업 관련 산업 및 전문가 단체
1425	가축 및 반려동물 도매업	189	기타 농산업 지원 서비스업
1426	농산물 관련 상품 도매업	1891	축산 분뇨 처리업
143	농산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1892	수의업 및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업
1431	농식료품 소매업	후방산업	
1432	음료 및 담배 소매업	11	농산업 투입재 산업
1433	반려동물, 화초 및 식물 소매업	111	농산업 관련 건설업
1434	농산물 관련 상품 소매업	1111	농산업 투입재 및 농식품 생산 관련 건설업
15	농산물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	1112	농작물 생산 및 축산 관련 건설업
151	농산물 화물, 가축 및 반려동물 운송업	112	농산업 투입재 관련 제조업
1511	농산물 화물 운송업	1121	농산업용 비료, 농약 및 사료 제조업
1512	가축 및 반려동물 운송업	1122	축산용 및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152	농산물 창고 및 물류터미널 운영업	1123	농산업용 공구 제조업
1521	농산물 창고업	1124	농산업용 기계 제조업
1522	농산물 물류터미널 운영업	1125	승마, 반려동물 및 곤충 관련 용품 제조업
16	음식점 및 주점업	113	농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161	음식점업	1131	농작물 재배 관련 및 수확 후 서비스업
1611	한식 음식점업	1132	축산 관련 서비스업
1612	외국식 음식점업	1133	농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참고 2

인구감소지역 개요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

- **인구감소지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규정된 지역으로, **전체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안부고시)」를 통해 지정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위 치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참고 3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관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 범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외 관심지역* 등을 포함할 계획

【관심지역 개요】

※ 관심지역 지정

- **관심지역**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고시(행안부고시)」 제2조제3호상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전체 18개 시·군·구** 지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 인구감소지역 관련 재정적 지원의 경우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함**(「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제1항)

< 참고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호)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인구감소지수"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값을 말한다.
3. "**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4. "조합"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별표 1] 관심지역(제2조제3호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구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인천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익산시
광주광역시	동구	경상북도	경주시, 김천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중구	경상남도	사천시, 통영시
경기도	동두천시, 포천시		

참고 4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내 농촌 분포

시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구	관할 읍·면	
		개수	%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	-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8	1.0
인천	강화군, 옹진군	20	2.3
광주	-	-	-
대전	-	-	-
울산	-	-	-
세종	-	-	-
경기	가평군, 연천군	16	1.8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81	9.2
충북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58	6.6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103	11.8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20	13.6
전남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82	20.8
경북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153	17.5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135	15.4
제주	-	-	-
총계	89개	876	100

※ **청서:**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촌(읍·면)지역이 없는 시·군·구